

공익신고자 보호·보상제도

•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.

- 비밀보장 의무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
- 주의·감독을 게을리한 사업주도 처벌

•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.

- 공익신고·협조를 이유로 신분상(해고 등)·인사상(징계 등)·경제적(계약해지 등) 불이익과 정신적·신체적 손상(집단 따돌림·폭행 등)을 받지 않습니다.
-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거나 받은 경우,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할 수 있으며,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.
- 이를 위반할 경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•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감면이 가능합니다.

- 공익신고로 신고자·협조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, 형벌·징계·행정처분이 감경·면제될 수 있으며, 직무상 비밀준수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

•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- 신고자·협조자와 그 친족·동거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• 공익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합니다.

- 공익신고 등으로 치료, 이사, 쟁송,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• 내부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.

- 공익신고로 국가 수입이 회복·증대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합니다.(최대 20억원)

공익신고제도

(국민의 건강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)

